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06
----------	-------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신장식 · 황운하 · 김선민
서왕진 · 김재원 · 김준형
정춘생 · 한창민 · 차규근
이해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정책목적과 공공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u></p>